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(공시송달)공고 제 2021-61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9. 23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

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,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공시송달 내용
이0준	1993.6.26	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리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-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-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동 서류를 2021년 9월 1일과 2021년 9월 7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(폐문 부재)

4. 공고기간 : 2021. 9. 23 . ~ 2021. 10. 7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박은영(Tel. 053-605-643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